

부 록

- 서산군국가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253면
- 서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257면
- 서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257면
- '93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내역/259면
-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내역/261면
-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263면
-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내역/270면

서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상이군경중”을 “국가유공자중”으로 하고,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 대상자의 상이 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 과제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원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u>상이군경</u>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면제대상) 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u>상이군경중 상이</u> 급수 1급 내지 5급에 <u>해당하는 상이</u> 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 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 구분표 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씨씨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p>	<p>제1조(목적) ----- ----- ----- ----- ----- ----- ----- -----</p> <p>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 ----- ----- ----- ----- ----- -----</p> <p>제2조(면제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국가유공자중 ----- ----- 해당 ----- 하는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 ----- ----- -----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제3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 받을 세목의 납기개시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이를 직원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p>	<p>.....</p> <p>제3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수 있다.</p> <p>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 번호표		【별표】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 번호표	
급 수	분 류 번 호 표	급 수	분 류 번 호 표
<u>2 급</u>	<u>14, 79, 98, 99, 102</u> <u>104, 105</u>	<u>“(삭 제)”</u>	
3 급	“(생 략)”	3 급	“(현행과 같음)”
4 급	“(생 략)”	4 급	“(현행과 같음)”
5 급	“(생 략)”	5 급	“(현행과 같음)”
6급 1항 (복합호수자)	“(생 략)”	6 급 (복합호수자)	1항 “(현행과 같음)”
6급 2항 (복합호수자)	“(생 략)”		2항 “(현행과 같음)”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하지 않은 <u>2급내지</u> <u>5급의</u>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 하지 계통 호수와 복합 된 경우에만 대상이 됨	비 고 <u>3급 내지</u> <u>5급</u>